

가락. 거여파출소 이중창 교체공사
시 방 서

2006. 03.

서울특별시송파소방서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가락.거여파출소 이중창 교체공사

2. 부지개요

- 1) 대지위치 : 가락.거여파출소
- 2) 지역,지구 :
- 3) 대지면적 : M²

3. 건축개요 (전체)

- 1) 용 도 : 근린공공시설 (소방서)
- 2) 건축면적 : M²
- 3) 연 면 적 : M²
- 4) 건 폐 율 : %
- 5) 용 적 율 : %

4. 공사범위

- 설계도에 표기된 일체공사
- 1) 철거 부분 : - 기존일부창호 철거(각층외부창호)
- 2) 신설 부분 : - 철거부분 창호 신설(방충망포함)

5. 주요마감재

- 1) 외부마감 :
- 2) 실내마감

구 분	실 명	마 감 재				비 고
		바 닥	걸레받이	벽	천 정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기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없는 모든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소방과소방서 직원으로서 현장담당의 명을 받은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공사현장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4. 이 의

(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현장대리인과 감독원이 협의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나 상호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본 공사의 시공중 설계도서상 누락 및 오기가 있을 경우, 수량의 증가, 변경 또는 기타공사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도급자부담으로 시공한다.

5. 경미한 변경

현장사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위치, 공법의 경미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6. 자 재

(1) 자재일반

가설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한국공업 규격품의 (K.S)신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한국공업 규격품이 없는 자재에 대해서는 국산 최우수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견 본 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 카다로그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공한다.

(3) 검 사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며, 한국공업 규격품으로서 계기가 있는것 이외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시험

자재의 품질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 및 방법과 건설공사 품질 시험규정에 의하여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한다.

7.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때에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을 얻은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후에 검사가 어려운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며, 그렇지 못할때는 사진, 기타, 후일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8.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도로법, 소방법, 전기관계법규,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환경관리법등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행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및 피해발생시는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을 진다.

- (1) 현장종사원, 관계자, 노무자등의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 (3) 인접건물, 옥외시설물, 지하기반시설, 수목 기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
- (4) 시공재료, 시공설비의 정리와 안전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 (5) 특히 직원들이 공사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시설 설치

9. 공사사진

공사진척사항과 시공현황,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을 촬영(천연색, 크기 12cm × 9cm 이상)하여 사진설명과 함께 사진첩을 2부씩 비치, 수시 열람 할 수 있게 하고 준공시 원판(FILM)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 정산처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준공후라도 감액 또는 수급자는 환급하여야 한다.

- (1) 설계서 내역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정부노임단가 기타 등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공사비 작성 준비율을 착오 적용하였을 때
- (2)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상태, 작업조건, 기타등의 변화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 (3) 감사기관에서 지적이 있을때

(4) 지급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였을때

(5) 감량이나 감가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였을때

11. 관련법규에 의하여 하도급을 실행하였을 때에는 관련법규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신고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2. 공사 중 피해대책

본 건물주위의 각종 부대시설물에 공사중 피해를 입혔을 경우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며, 본 건물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13. 뒷정리 및 건물인계

(1) 공사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건축물을 인계하여야 하며, 시공상 지면 및 기존 시설물의 변형, 손상부분은 원상복구한다.

(2) 준공후 건물 인계시까지 유지 관리는 수급자의 책임이며 파손, 도난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준공후의 건물관리용 자재, 기타 필요한 자재는 조서 작성하여 인계시까지 보관하고 이에 대한 보관, 인계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14. 기 타

본 공사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건설교통부 건축표준 시방에 의함)

제 2 장 방 수 공 사

2-1 방수공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등록된 방수단종 공사업면허 소지자라야하며 공사 착수전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한다.

2-2 시공 범위

(1) 건물내, 외부의 바닥, 벽, 지붕바닥등 방수를 해야 할 부분에 각기 그부분에 적합한 방수공법을 적용한다.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요한 상황은 모두 시공자의 책임으로 하고 기타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품 명	규 격	시 공 부 위	비 고
1. 코 킹 방 수	10 x 10	창호 및 기타 접합부	외 부
2. 코 킹 방 수	5 x 5	창호 및 기타 접합부	내 부

(2) 바 탕

- ① 창호 설치후 창틀의 공간은 밀실하게 마무리한다.
- ② 요철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③ 바탕의 상태는 충분히 건조되고, 바탕의 청소는 세심하게 한다.
- ④ 기타 사항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3 각 종 코 킹

가) 도면에 JOINT의 크기 및 재료에 대한 특기가 없는 부분에는 다음에 준하여 코킹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공사금액은 본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증액되지 않는다.

나) 재 료

내후성, 내구성, 시공이 우수한 실리콘계의 일액형 실란트를 사용하되 사용장소에 따라 특성에 맞는 완제품을 선정 사용하고 사전 제품사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사용한다.

* 분류 및 사용부위

실란트 분류	사 용 장 소	코킹형상 크기	색상
클라스 실란트	유리 + 유리	5mm x 5mm	지정색
DC 781	유리 + 금속창틀		
메탈 실란트	각종철관 및 알루미늄 지붕 이음새 홈통 및 물받이등의 접합부분	별도지정	지정색
DC 790	신축, 팽창이 큰 부분에 사용 알루미늄. 커튼월 콘크리트 + 창호둘레	10mm x 10mm	지정색
DC 789	신축, 팽창이 적은 부분에 사용 화강석, 타일,샷시,창틀둘레,조인트,창호방수 코킹클린룸 내부 실링재	10mm x 10mm	지정색

다) 시 공

1) 바탕청소

사용 부위에 실란트 비접착성 BACK - UP제를 설치하고 오물,먼지,습기등을 완전히 제거 한다.

2) TAPE 바르기

코킹크기에 맞추어 주위에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킹 테이프로 보양한다.

3) PRIMER 칠

코킹 부위의 상태에 따라 이에 적합한 PRIMER를 선정하여 얇게 도포, 경화후 실란트를 주입 한다.

4) 누름질(TOOLING)

실란트 주입 후 누름대를 이용하여 주입면 전체를 고루 눌러 밀실하게 채운다.

5) 검사, 보양

누름질이 끝나면 주입상태를 재점검하고 기포가 있거나 접합상태가 불량한 것은 즉시 재차 주입 하고 테이프를 제거한 후 최소 1시간 동안은 접촉을 금하여 먼지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차단 해야 한다.

라) 시공시 주의사항

1) 사용전 사용기간, 색상을 점검한다.

2) 실란트는 홈의 2면(양측면)에는 접착되도록 한다.

3) 부득이 BACK-UP제를 사용치 못하거나, 특수한 코킹은 BOND BREADER TAPE를 사용해서 2면 접착 되도록 한다.

- 4) 실란트 형상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한 흠의 나비: 깊이는 2:1의 비율을 원칙으로 주입한다.
- 5) 공사중 먼지바람,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청명한 기후 하에 시공하되 기후조건은 -5 C이상 +5 C 이하 습도 85%이내에서 실시한다.
- 6) 특수 부분의 흠의 크기 및 형상계수는 제조사와 협의하여 신축, 팽창에 적합 하도록 해야 한다.
- 7) 화강석, 대리석의 코킹재는 초산타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 재 료

유성 코킹재는 K.S.F 3204(건축용 유성코킹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 폴리설파이드 실링재는 K.S.F 4910 (건축용 로리 설파이드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실링재는 K.S.F 4909 (건축용 실리콘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특기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다.

바) 공 법

- 1) 줄눈이 깊을때에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우기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얇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보드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뒷채우기재 및 본드브레이커를 생략한다.
- 2)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착체의 종류에 의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가 있다.
- 3)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4)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한다.
- 5) 마스킹테이프는 시공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충전부분 외에 실링재가 부착한 경우는 피착체를 침해하지 않는 용제로 신속히 청소한다.
- 6) 이종의 실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2-4 공통 사항

- 1) 시공자는 작업개시전 도면 및 시방서를 숙지하여 공법 및 시공순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작업에 임할 것.
- 2) 추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시공하고 하자 발생 예상부분등은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후 시공에 임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

제 3 장 미 장 공 사

3-1 일반 사항

- (1) 각실 및 장소별 마감의 일람표를 만들어 작업원에게 주시시키고 해당하는 곳에 게시한다.
- (2) 이질구조체등으로 인하여 균열이 예상되는 곳의 control Joint 도면을 작성하여 게시한다.

3-2 시멘트 모르터

(1) 재 료

- 시멘트: K.S.L(PORTLAND CEMENT)의 규격에 합격 하는 보통 PORTLAND CEMENT 로 하고 시멘트도 이에 따른다.
- 모 래: 모래는 유해량의 침부, 흙덩이 기타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것으로 한다

(2) 시멘트 몰탈바르기

두께는 도면에 의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① 배합 및 바름두께

종 별	두께 (MM)	배합용적비 시멘트 : 모래	바 림 회 수
창호주위	24	1 : 3	1 회

- ② 창호틈이 과다할때는 기성 콘크리트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뿌린후된 모르터로 끝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 ③ 콘크리트, 벽돌등 바탕이 지나치게 건조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을 하여야 한다.
- ④ 한냉기에 부득이 시공을 하여야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보양및 보온을 한 다음 하여야 하며 또한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경우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 ⑤ 콘크리트와 이질재와의 접합은 서로 다른 바탕이 동일 면에서 접합할때 바름면의 균열 방지 방법에 있어서는 메탈라스 붙여 대기 또는 줄눈 끊기를 하는등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제 4 장 창호 및 유리 공사

4-1 창호 공사

4-1-1 일반사항

- 1) 제작된 제작도 및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제작 및 설치에 착수한다.
제작도 작성시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시 구조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제작 및 설치 공작도에는 제작과정에서 설치 완료시 까지의 필요한 모든 사항으로서 치수 두께, 규격, 재료의 열처리상태, 표면처리상태, 접합방법, 부속품 및 관련시설과 연결되는 부분의 접속 방법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구조는 충분한 강도가 있는것으로 하고 설치후 방수 및 재해에 완전무결하며 장시일 경과 후 까지도 변형 및 결함 등이 발생않는 것이어야 한다.
- 3)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되 견본은 각 부재의 두께, 합금형, 표면처리상태, 색도, 허용오차 등이 명시된 것으로서 300mm 단위로 제출한다.
제출 후 승인된 견본은 감독원이 보관하고 제품의 기준으로 한다.
- 4) 설치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4-1-2 칼라 (1차발색, 플로로폰) 창호

1) 주재료

- (1) 칼라(1차발색, 플로로폰) 100mm BAR사용, 도면에 명시된 규격 및 부속자재 일체
- (2) 색상 및 제품의 특성은 감독자와 협의후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 2) GASKET : 모든 GASKETSMS 는 NEOPPENE을 사용하고 SHEET, SASH와 SASH 사이에 밀착성과 수밀성이 양호하도록 해야 한다.

- 3) 그외의 모든 재료는 생산업체의 시방 및 시험치에 준하여 승인 후 동일 제품을 사용한다.

1. 제 작

- 1) 도면 : 공사착수전 SHOP D.W.G 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도면에는 제작과정으로 부터 설치, 완료까지의 필요한 모든 사항으로서 치수, 규격, 두께, 재료의 열처리 상태, 표면처리 상태, 접합방법, 부속품 및 관련시설과 연결부분의 접속 방법이 명시 되어야 하며, 구조는 충분한 강도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제작, 납품 방법은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설치후 방수, 방풍 및 재해에 완전무결하여야 하며 장시일이 경과된 후에도 결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2) 견본 : 각 부재의 두께, 합금명, 표면처리상태, 색상, 허용오차 등이 명시된 표준견본을 200M/M 단 위로 제출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견본은 감독원이 보관하고 제품의 기준으로 삼는다.
- 3) 부재의 적수허용차 : 샷시바의 허용공차는 KSD/6759 및 창호 제품의 허용공차는 KSF 506 이내 라야 한다.
- 4) 알미늄 BAR의 기준두께 : 구조 계산을 기준으로 하되 하중에 대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 5) 팽창 및 수축 : 모든 알미늄재는 열에 의한 팽창이나 수축으로 인하여 모형이나 기능상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팽창 및 수축에 대하여 충분하고 원활한 대비를 하여 설계, 제작후 납품한다.

6) 절 단

- (1) 판재 및 샷시와 이를 보강하기 위한 모든 부자재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히 절단 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이 유지되어야 한다.
- (2) 절단시 판재의 흠이나 갈라짐이 생겨서는 안되고 절단후 제품의 허용공차는 +2m/m 이내 이어야 한다.
-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으면 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물은 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7) 절 곡

- (1) 판재의 절곡은 가공도에 준하여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절곡시 판재의 흠이나 갈라짐이 생겨서는 안되고 절곡후 제품의 오차는 + 2m/m 이내여야 한다.

8) 가 공

- (1) 판재의 가공은 판재보호 조치에 유의하여 각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 (2) 절단, 절곡된 판은 조립공장으로 옮겨지기전에 천 또는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시와 상, 하차시 굽힘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3) BAR의 가공은 조립, 가공도면에 의하여 가공되어야 하며 프레스의 금형 작업시는 게이지를부설함으로서 양산에 따른 제품의 오차가 없도록 할것이며 가공 요철이나 찌그러짐이 없도록 금형은 주기적으로 손질하여야 한다.

9) 검 사 : 뒤틀림, 꼬임, 휨 등 형재로서 사용 불가능한것은 불합격 처리한다.

10) 조 립

- (1) 제품 조립시 바의 색상은 유지하여야 한다.
- (2) 바의 절단 작업시 (90.45) 절단면을 매끄럽게 처리하고 타부재와의 이음면에 흠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2. 포장 및 운반

1) 포 장 : 조립제품은 감독원의 검사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2) 운 반

- (1) 운반도중 부재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제품 서로간의 마찰이 없게 한다.
- (2)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깔판을 사용할 것
- (3) 하차후 적재시 제품 서로간의 눌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를 깔고 고무벨트로 견고히 맬것.
- (4) 각 제품에 창호의 위치, 가로, 크기, 제작일을 기입한 마크를 치부한다.

3. 설 치

1) 현장운반

- (1) 현장 또는 제품의 현장설치를 위한 설치인부에 의하여 손상이 가지않도록 한다.
- (2) 양정시 안전책임자 또는 현장책임자에 의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것.

2) 제품설치

- (1) FASTENER 및 보강 철물 설치는 알미늄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 조

정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 (2) 도면에 의한 정확한 위치내에 볼트,너트로 조인후 용접으로 너트의 풀림을 방지하고 부식을 막기위한 방청 작업을 실시한다.

4. 보양 및 안전

- 1) 제품이 설치된 후에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을 철저히 하고,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 2) 공장에서 포장된 제품이라도 설치 후 재 포장한다.

5. 정리 및 마감

- 1) 설치후 현장 주변은 설치전과 마찬가지로 정리 정돈을 하여 제품에 손상을 입히거나 타 공정에 해가 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방 수

- 1)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 2) 현장 코킹 작업시
 - (1) 코킹 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 (2)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 (3) 가능한 BACK - UP 재를 사용하여 3면을 접착을 방지한다.

7. 검 사

- 1) 설치전, 후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 작업을 하여야 한다.
- 2) SASH의 부식 방지를 위한 재포장및 STEEL 재료의 방청작업을 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한다.
- 3) 수직,수평 및 FASTENER의 고정 및 용접상태 확인을 감독원에게 받아야 한다.
- 4) SASH 1차적인 청소상태도 검사시 확인,조치한다.

8. 창호철물

일반사항

가. 창호용 철물(이하 철물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제조회사명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철물을 부착하는 부분은 약하지 않도록 보강한다.

4-2 유리 공사

4-2-1 일반 사항

각종 유리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하고 부재의 견본 및 제작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4-2-2 적용범위

종 류	두께 (mm)	구 성	시 공 장 소
복층유리	18		
투명유리	5		도면에 의한다
강화유리	5, 8		

4-2-3 유리재료

가) 맑은유리 : KSL 2012의 (프로트 판유리)의 A급 규격품

나) 강화유리 : KSL 2012의 A급 유리를 사용하여 KSL 2002 (강화판유리)의 규격품

다) 거울

. KSL 2021 의 A급 규격품 유리를 사용한다.

. 가장자리의 테가 없는 방습형으로 한다.

4-2-4 유리 끼우기 재료

가) 적용범위

위 치			
알미늄 창호	치올쿨계	5*5 기타는	KSF 4910 9030
기 타		도면에 의한다	적합한 제품

나) 유리는 샷시의 치수를 확인하고 공장 제작을 원칙으로 하여 현장에서의 가공 및 절단은 없도록 한다.

다) 유리의 취부시 고정은 썬프력을 필히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간격은 제조사의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라) 유리의 창틀에 매입되는 깊이,크리어런스,면과의 폭등은 제조사의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마) 기타사항 및 보양, 청소 등은 건물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철 거 공 사

5-1 철거공사

5.1.1 해체시공 계획

(1) 현 장 조사

- ①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철거부분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곽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2) 시공계획서

- ① 해체를 시공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해체공법은 해체대상부분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1.2 가설물

(1) 해당사항 없음

5.1.3 시 공

(1) 일반 사항

이 지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장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 준비

- ①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 ②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 ①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해체부분의 종류에 따라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 ④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5.1.4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 대책

- ①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 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학생들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 ②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 장소 설치 또는 그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안전 대책

- ①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에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③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는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체재 처분

- ①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②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고재처리 한다.
- ③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은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 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 ⑤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1.5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 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 ①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 ②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 ③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 작업

-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며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 ②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5-2 배수공사

해당사항 없음